

파주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안

의안 번호	519
----------	-----

제출년월일 : 1999. 11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사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7 규정에 의하여 100억이상의 공사는 지방위원회(경기도 기술심의 위원회)에서 기술심의를 시행하고 있으나 지방위원회 기술심의대상 이하의 규모 공사는 자체심의 기구가 없어 투자의 적정성 판단이 어려워 파주시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 설계의 타당성, 시공의 적정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함

□ 주요골자

- 설계자문위원회 구성인원 및 위원자격 명시 (안 제2조)
- 설계자문 대상공사 명시 (안 제5조)
- 설계자문 대상공사의 자문범위 (안 제6조)
- 설계자문위원회 자문요청시 제출서류범위 (안 제7조)
- 설계자문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안 12조)
- 설계자문위원회 참석의원 수당 (안 제14조)

파주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이하“령“이라 한다) 제38조의7규정에 의하여 파주시설계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그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50인이내의 위원으로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건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 중에서 파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의회 의원
2. 건설업무와 관련된 시 본청의 5급이상 공무원
3.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
4. 건설관계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
5. 당해분야 대학의 조교수급이상인 자
6. 당해분야의 박사학위 취득자 및 석사학위 취득후 5년이상 그분야에 관한 연구또는 실무경험이 있는자
7. 당해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후 당해분야에 3년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8. 기타 당해분야에서 1호내지 7호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제3조(위원회 기능) 설계자문위원회는 관계법령 및 위원회 구성목적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의7 제4항에 따라 시행하는 설계등 용역에 대한 단계별 설계자문
2.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9조 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설계심의에 갈음하기 위하여 설계자문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3.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기술.공법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에 대한심의

4.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설계,시공인찰 공사의 설계 적격심의
5.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시행한 심의,자문등에 대한 사후관리
6. 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다른법령에서 설계자문위원회에 위임한 심의,자문점검 확인등의 사항
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 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하되 연임할수 있으며,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설계등 자문대상 공사) ①위원회의 설계등 자문(이하“자문“이라 한다) 대상공사는 파주시가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건설공사로 한다.

1. 총공사비 30억원이상의 건설공사(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제외로하는 건설공사는 제외)
2. 총 공사비가 30억원미만 또는 제1호의 사항에서 제외하는 건설공사라도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
4. 설계변경등으로 인하여 총공사비가 일정규모이상 증액되는 건설공사로서 규칙에 정하는 공사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위원회에 부의된 때에는 안건 접수일로부터15일이내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15일)에 한하여 연장할수 있다

제7조(자문범위) 위원회의 자문범위는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한다.

1. 설계전 사전조사 사항 및 종합계획의 적정성
2. 교통처리계획(공사중 차량소통계획 포함) 및 차량동선계획
3. 시설물의 평면계획,입체계획,배치계획,미관계획 및 환경계획의 적정성
4. 구조계획 및 구조단면 결정의 적정성

5. 각종 설비방식의 적정성
6. 재료.공법 및 기술적용의 적정성
7. 공사 시방내용 및 공정계획의 적정성
8.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에 관한사항
9.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의 적정성
10. 기술개발 및 신공법 적용의 가능성등
11. 구조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
12. 기타 필요한 사항

제8조(자문요청) ①제6조 제1항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주관부서의장은 설계등 용역의 착수단계,중간단계 및 마무리단계별로 위원회에 자문요청하여 자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설계등 용역의 규모가 작거나 자문을 받을 만한 중요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자문을 요청할 때에는 설계자문요청서에 다음 각호의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과입에정공정표상 진행된 성과물로 한다.

1. 설계도면 및 설계설명서
2. 자문요청자료
3. 제구조 단면 및 규모결정산출서
4. 공법.기기 및 재료등의 산정검토서
5. 제설비의 용량 및 규모결정산출서
6. 수리계산서 및 수리모형 시험성과표
7. 현황조사 및 지질조사등 공법결정에 필요한 자료
8. 기타 설계기준 및 지침서등 설계서작성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

③ 건설공사 설계의 변경을 자문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변경자문요청서와 다음 각호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계도서는 위원장이 미리 정하는 부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설계서
2. 설계변경내역서
3. 기타 설계변경 자문상 필요한 자료

제9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회의개최3일전 까지 자문안건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촉위원중 10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제10조(안전설명) 자문을 요청한 부서의 장과 용역책임기술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자문요청한 건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1인을 두되, 간사는 도로건설담당이 되며 서기는 담당직원이 된다.

②간사는 회의록 및 자문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자문사항 사후관리) 위원회의 자문결과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에 반영 하여야 하며, 설계용역의 성과품 납품전에 조치결과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소위원회)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사항에 따라 안전별 또는 전문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의장 및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위원장은 자문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수를 조정할수 있다.

④소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 및 제4조 내지 제12조를 준용한다.

제14조(관련서식) 설계자문요청서등 관련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수당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파주시 위원회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수당,여비등을 지급할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이조례에서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